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 투자제도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요 약

본고는 최근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투자 관련 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략 산업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 이전까지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핵심광물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투자 심사 및 제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정책은 산업정책, 기술정책, 공급망 정책과 결합된 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구조로 투자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기술 보호, 핵심 인프라 보호,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경제안보 관련 분야에서는 투자 및 기술 이전 관리 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투자정책은 투자 자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략 산업과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서론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략산업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이슈 부상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연계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투자와 기술 이전, 공급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은 투자유치, 산업발전,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안보, 핵심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이전이 전략기술 유출이나 공급망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투자와 기술이전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와 해외투자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투자정책은 기본적으로 투자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제한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보면 투자정책이 산업정책, 기술정책, 공급망정책과 결합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략기술과 핵심 인프라, 공급망 안정성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투자와 기술 이전, 해외 생산 이전 등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와 향후 제도적 검토 필요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1〉 한국과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 비교

단위: 십억 달러

국가	2015년			2024년			2015~2024년 투자 순유출 (B-A)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ODI Stock)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 (FDI Stock)	투자 순유출 (ODI-FDI) (A)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ODI Stock)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 (FDI Stock)	투자 순유출 (ODI-FDI) (B)	
미국	6,059	5,731	328	9,758	15,567	△5,809	△6,137
EU	9,553	8,324	1,229	13,357	11,461	1,896	667
중국	1,098	1,220	△122	3,118	3,650	△532	△410
일본	1,229	174	1,055	2,151	220	1,931	876
한국	286	180	106	763	587	176	70

자료: UNCTAD.

주: 투자 순유출액은 2015~2024년 기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ODI Stock)과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FDI Stock)을 차감하여 산출함.

〈표 1〉은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ODI Stock)과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FDI Stock)을 비교하여 순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이 해외직접투자 누적액보다 큰 순투자 유입국 구조를 보이는 반면, EU, 일본, 한국은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이 더 큰 순투자 유출국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5년에는 순투자 유출 구조였으나 2024년에는 순투자 유입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리쇼어링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구조는 각국의 산업정책, 공급망정책, 투자 규제 정책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순투자 유입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및 기술, 생산 기반을 자국 내로 유치하는 구조를 갖는 반면, 순투자 유출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생산 및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조를 갖는다. 최근 주요국이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와 해외투자 관리 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 구조와 산업전략, 공급망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투자정책이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투자정책은 통상정책, 산업정책, 기술정책, 공급망정책과 연결되는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안보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2. 주요국 투자 관련 제도 동향

(1)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최근 주요국의 FDI(Inward FDI,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 제한 제도를 넘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주로 방위산업이나 통신, 에너지 등 일부 안보 관련 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핵심광물, 데이터산업 등 전략 산업 전반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로 인해 핵심기술 유출, 전략 산업 경쟁력 약화, 공급망 의존도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정 산업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 심사하거나 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산업 보호와 산업경쟁력 유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적 성격도 동시에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외국인 투자 규제는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데이터, 공급망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전략 산업 투자 확대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투자 규제는 관세, 수출통제, 보조금 정책, 공급망 협력 정책과 함께 주요국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략 산업 경쟁과 기술 패권 경쟁의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고 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는 1988년 엑슨플로리오 조항(Exon-Florio)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7년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통해 심사 범위와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8년 제정된 FIRRMA는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크게 강화한 법으로, 기존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인수·합병 중심의 투자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FIRRMA 이후에는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까지 심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핵심기술, 핵심인프라,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TID business)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통신, 데이터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CFIUS 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기업 투자에 대해 투자 금지 또는 투자 철회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제도는 단순한 국가안보 보호를 넘어 첨단기술 산업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보호를 위한 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EU

EU는 회원국별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EU FDI Screening Regulation'을 도입하여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 공유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로 인해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심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핵심 인프라, 핵심기술, 데이터, 에너지, 원자재, 식량안보, 금융 인프라 등 전략 분야 투자를 심사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EU는 2024년 1월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FDI Screening Regulation)' 개정안을 제안하여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외국 기업이 EU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EU 내 신규 투자(Greenfield investment), 제3국 자본이 EU 기업을 통해 투자하는 간접 투자, 연구 협력 및 기술 이전 등도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는 전략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투자 규제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제안된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에서는 전략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급망

〈표 2〉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국가	법률명	제정	주요 내용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 (FIRRMA)	2018년 제정 (2020년 2월 13일 발효)	- CFIUS 권한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심사 범위 확대 - 기존 기업 인수(M&A) 중심 심사에서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까지 확대 - TID(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 개인정보) 관련 기업 투자 심사 - 군사시설 및 민감 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를 CFIUS 심사 대상에 포함 - 외국 정부와 연계된 투자 및 핵심기술 투자 의무 신고 제도 도입
	외국인투자및국가안보법 (FINSA)	2007년 제정	- 엑슨플로리오 조항 개정 및 CFIUS 제도 법제화 - 외국인 투자 심사 절차 및 대통령 투자 금지 권한 강화
	엑슨플로리오 조항	1988년 제정	- 외국인 투자로 국가안보 위협 발생 시 대통령이 투자 금지 또는 철회 명령 가능
EU	EU FDI Screening Regulation	2019년 시행 2024년 개정안 제안	- EU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 정보 공유 및 협의 체계 구축 - 핵심 인프라, 핵심기술, 데이터, 공급망 등 전략 분야 투자 심사 - 2024 개정안에서 그린필드 투자 및 간접 투자 포함 방향으로 심사 범위 확대 추진
	산업가속화법 (Industrial Accelerator Act(IAA))	2026년 3월 4일 제안 발표[1)]	- 전략 제조업 및 공급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 전략 제조업 및 공급망 산업에 대한 투자 심사 강화 및 공급망 요건 부과 방안 논의 단계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1949년 제정, 지속 개정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안전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전 신고 제도 - 핵심기술, 방위산업,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 전략 산업 투자 심사 - 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사전 승인 필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経済安全保障推進法)	2022년 5월 제정	-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 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 보호, 특허 비공개 제도 도입 - 경제안보 관련 전략 산업 및 핵심 기술 보호 정책 추진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U.S. Congress, Exon-Florio Amendment(1988); U.S. Congress,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2007); U.S. Congress,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201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CFIUS Regulations;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EU)(2019); European Commission, FDI Screening Regulation Revision Proposal (2024); European Commission, Industrial Accelerator Act Proposal(2026); Government of Japan,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Government of Japan,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2022).

요건을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투자 규제를 산업정책 및 공급망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EU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3) 일본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안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전 신고 및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IAA는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제안(proposal) 단계.

일본은 반도체, 통신, 에너지, 방위산업, 항공, 핵심 소재산업 등 전략 산업을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사전 신고 및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1%로 낮추는 등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전략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 보호, 중요 인프라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투자 규제를 단순한 투자 제한 제도가 아니라 공급망 및 핵심기술 보호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제도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이 아니라 전략 산업 보호, 핵심기술 유출 방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규제는 관세, 수출통제, 보조금 정책, 공급망 협력 정책과 함께 주요국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투자정책이 단순한 자본 이동 관리가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구조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해외투자 및 기술 이전 관련 규제

최근 주요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해외직접투자(ODI)는 기업의 시장 진출, 생산 거점 확보, 원가 절감, 자원 확보 등을 위한 일반적인 경영 전략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첨단기술 유출, 군사적 전용 가능성, 공급망 공동화, 전략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투자 역시 안보 정책의 관리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는 단순한 상품 수출이나 기술 이전뿐 아니라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지분 투자, 연구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투자가 경제안보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국의 ODI 규제는 아직 제도적 완성도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전략기술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고, 우려국에 대한 자본·기술·경영 노하우의 이전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미국은 이미 특정 국가와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금지·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EU는 회원국 차원의 검토 체계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일본은 외환 및 외국무역 관련 법체계를 통해 기술 이전과 대외거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강화 흐름 속에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기술 유출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ODI가 더 이상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 보호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미국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해외투자에 대

한 독자적 안보 규제 체계를 제도화한 국가이다. 미국은 2023년 행정명령(E.O. 14105)을 통해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의 특정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재무부는 2024년 최종규정을 발표하여 2025년 1월 2일부터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해외투자보안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든 해외투자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홍콩·마카오와 같은 우려국의 특정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상 민감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일부 거래는 금지되고, 일부 거래는 사전 또는 사후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2)]

미국의 ODI 규제는 단순한 자본 이동 통제라기보다, 미국의 자금·기술·경영 지원이 우려국의 군사력 증강 또는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 반도체, AI, 양자기술을 미래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투자 규제를 통해 우려국의 첨단기술 역량 축적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ODI 제도는 수출통제와 별개의 제도이면서도, 기술통제·산업정책·대중 견제 전략과 결합된 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3)]

2) EU

EU는 아직 미국과 같은 구속적이고 독립적인 ODI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2024년 1월 발표한 경제안보 패키지(Economic Security Package)에서 해외투자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제시하였고, 2025년 1월에는 회원국들이 비EU 국가에 대한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권고안(Recommendation)을 채택하였다.[4)] 이 권고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경제안보상 전략성이 높고 위험도가 큰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EU의 현 단계 ODI 정책은 미국처럼 직접적인 금지·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기보다, 회원국 차원의 정보 수집과 위험 평가, 제도 정비를 유도하는 준비 단계의 성격이 강하다.

EU가 ODI 검토 체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전략기술의 역외 이전과 공급망 취약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첨단기술 기업이나 투자자금이 제3국의 전략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 EU의 기술우위와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5)] 다만 EU는 회원국별 제도 차이와 자본 이동의 자유라는 원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단기간 내 미국 수준의 일률적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협의적 방식으로 ODI 관리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outbound-investment-program(접속일: 2026. 3. 24).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ogram Regulations",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outbound-investment-program/program-regulations(접속일: 2026.3.24.).
4) European Commission(2025), "Commission calls on Member States to review outbound investments and assess risks to economic security", Press Release, Jan. 15.
5) European Commission(2026), "Investment screening",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investment-screening_en(접속일: 2026. 3. 24).

3)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독립된 ODI 규제 제도를 전면 도입한 국가는 아니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을 중심으로 투자, 기술 이전, 대외거래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관련 자료는 FEFTA가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일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외환·무역·대외거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조정하는 법체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중요물자의 안정공급, 기간인프라 보호, 첨단 중요기술 개발 지원, 특허 비공개 제도 등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환경은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기술 유출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미국처럼 특정 해외투자를 금지·신고 대상으로 정한 독립적 제도가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경제안보 강화 흐름 속에서 전략기술과 중요산업의 해외 이전 및 해외사업 전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서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특히 반도체, 첨단소재, 방산, 이중용도 기술 분야에서는 해외투자와 기술협력이 기술 유출 또는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일본 역시 미국·EU와 유사한 방향의 ODI 관리 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주요국의 해외투자 관리 제도는 투자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략기술 및 핵심 산업과 관련된 투자와 기술 협력에 대해 위험 기반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경제안보 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3〉 주요국 해외직접투자(ODI) 규제 관련 제도 주요 내용

국가	제도/법령	도입	주요 내용
미국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EO 14105, Treasury Final Rule)	2023 EO 2024 규정 2025 시행	– 중국·홍콩·마카오 등 우려국 대상 특정 해외투자 규제 –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분야 투자 규제 – 금지 거래(Prohibited transactions)와 신고 의무 거래(Notifiable transactions) 구분 – 지분투자, 합작투자, Greenfield 투자, 기술협력 등 포함
EU	Outbound Investment White Paper/ Recommendation	2024/ 2025	– 전략기술 분야 해외투자 리스크 검토 필요성 제시 –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기술 분야 대상 – 회원국 해외투자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체계 구축 권고 – 규제보다는 정보 수집 및 위험 평가 중심의 초기 단계 정책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지속 개정/ 2022	– 기술 이전, 해외사업 관련 거래, 대외투자 관련 거래를 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 – 전략기술 및 민감기술 해외 이전 및 기술협력 거래 관리 –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기술 보호 중심 경제안보 정책 추진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Final Rule(2024); Executive Order 14105(2023);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Outbound Investments(2024);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Outbound Investment Screening(2025); Government of Japan,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FEFTA); Japan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2022); METI Economic Security Policy Documents.

3. 주요국 투자 심사 및 제한 사례

(1)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사례

최근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통해 실제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투자를 철회하도록 명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단순한 제도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및 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도체, 통신, 배터리, 데이터, 방위산업, 핵심 인프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금지 또는 철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반도체·데이터 분야 중심의 투자 금지 및 철회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사하며, 필요시 대통령 명령을 통해 거래를 금지하거나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Broadcom)의 퀄컴(Qualcomm) 인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하였고, 명령문은 해당 인수(takeover)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사례는 반도체 및 차세대 통신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수가 미국 국가안보 판단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6]

또한 2018년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의 머니그램(MoneyGram) 인수는 CFIUS 승인을 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미국 정부는 머니그램이 보유한 미국 시민의 금융 거래 및 개인정보 데이터가 중국 기업에 이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머니그램과 앤트 파이낸셜의 공동 발표문은 양사가 CFIUS의 승인을 얻지 못해 합병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어, 금융결제 및 개인정보 관련 기업 역시 미국의 안보 심사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7]

이미 완료된 투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철회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중국 쿤룬테크(Beijing Kunlun Tech)의 그린드르(Grindr) 보유와 관련해서는 미 재무부 FOIA 로그에 "Beijing Kunlun Tech Co. Ltd. divest Grindr" 관련 요청이 명시되어 있어 미국 정부가 해당 투자에 대해 매각를 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이는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사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17년 래티스 반도체(Lattice Semiconductor) 인수 건도 대통령 명령으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백악관 명령은 캐니언 브릿지(Canyon Bridge) 측과 래티스((Lattice) 반도

6) The White House(2018), "Presidential Order Regarding the Proposed Takeover of Qualcomm Incorporated by Broadcom Limited", Mar. 12.
7) PR Newswire(2018), "MoneyGram And Ant Financial Announce Termination Of Amended Merger Agreement", *Press Release*, Jan. 2.
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Departmental Offices, FOIA Log October 1- December 31, 2019",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36/2020-1st-Quarter-Log-of-FOIA-Requests.pdf(접속일: 2026. 3. 24).

체가 거래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명령하였다.[9] 또한 미 재무부의 CFIUS 연차보고서는 2016년 엑시트론(Aixtron)의 미국 사업 인수 금지와 2017년 래티스(Lattice) 인수 금지 사례를 공식적으로 열거하고 있다.[10]

2) EU·영국: 반도체 생산 시설과 첨단 제조역량 보호

유럽에서는 EU 차원의 투자심사 협력체계와 함께 회원국 및 영국 정부가 자국 제도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엘모스 반도체(Elmos Semiconductor)의 도르트문트 웨이퍼 팹을 중국계 소유 기업의 자회사인 실렉스(Silex Microsystems)에 매각하는 거래를 금지하였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당시 연방내각이 투자심사 절차에서 해당 매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례는 반도체 생산 시설 자체가 전략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1]

영국도 2022년 뉴포트 웨이퍼 팹(Newport Wafer Fab) 인수 건에 대해 국가안보투자법(NSIA)상 최종명령을 발동하였다. 영국 정부 공고문에 따르면 장관은 해당 거래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고, 넥스페리아(Nexoeria NV)가 최소 86%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하였다. 공고문은 위험 사유로 반도체 기술·노하우와 해당 지역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다.[12]

엑시트론(Aixtron) 사례는 독일과 미국의 안보 우려가 결합된 대표적 사건이다. 독일 정부는 2016년 초기 승인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미국 대통령도 엑시트론의 미국 사업 인수를 금지하였다. 미 재무부 발표는 대통령이 엑시트론의 미국 자산 인수를 금지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UNCTAD 투자정책 모니터도 독일 정부가 중국 투자자의 엑시트론 인수에 대한 무이의 증명(certificate of non-objection)을 철회했다고 정리하고 있다.[13]

3) 일본: 공개적 금지 사례보다 사전 신고·지분규제를 통한 예방적 관리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개별 금지 사례가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편은 아니지만, FEFTA 체계 아래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신고 방식으로 폭넓게 관리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정업종(Designated Business Sectors) 기업에 투자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상장회사 주식 취득 시 사전심사 기준을 10%에서 1%로 낮췄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일본이 실제 금지 명령보다는 낮은 지분 기준, 지정업종 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영향력 확대를 예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14]

9) The White House(2017), "Order Regarding the Proposed Acquisition of Lattice Semiconductor Corporation by China Venture Capital Fund Corporation Limited", Sep. 13.

10)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Statement on the President's Decision Regarding the U.S. Business of Aixtron SE", *Press Release*, Dec. 2.

11) U.S.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2022), "Elmos chip factory cannot be sold to Chinese investor – cabinet blocks sale", *Press Release*, Nov. 9.

12)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2022), "Acquisition of Newport Wafer Fab by Nexperia BV: notice of final order", Nov. 16.

13) UNCTAD(2016), "Withdrawal of the approval of the acquisition of Aixtron by Chinese investors", Oct. 24.

또한 일본 재무성의 최근 연차보고서는 일본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가 1% 이상 의결권 취득과 같은 비교적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안정공급을 위한 핵심업종 추가도 공표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공개된 '금지 사례'보다 제도 자체의 촘촘한 사전 신고 구조와 경제안보 목적의 지정업종 확대가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15]

(2) 주요국 전략 산업 관련 해외직접투자 및 기술 이전 규제 사례

최근 주요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투자에 대한 심사에 더해, 자국 자본과 기술의 해외 이전이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ODI 규제는 FDI와 달리 제도 도입 역사가 짧고, 개별 거래의 금지·철회 사례가 공개적으로 축적된 정도도 아직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실제 공개된 집행 사례 자체보다, 제도 시행 방식과 대표적 관리 사례를 통해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미국

미국은 2023년 행정명령 14105호를 바탕으로 재무부가 2024년 최종규정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이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모든 해외투자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홍콩·마카오를 '우려국가(countries of concern)'로 특정하고,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는 금지하고 일부 거래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는 구조이다.[16]

미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본 이동만이 아니라, 투자와 함께 이전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 즉 경영지원, 기술 노하우, 네트워크, 인재 연결 등이 우려국의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미 재무부 FAQ는 미국인이 비미국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금지거래를 '고의적으로 지시·관여'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단순한 직접투자뿐 아니라 우회적 관여까지 포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17]

다만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된 신설 제도인 만큼, FDI 분야의 브로드컴-퀄컴(Broadcom-Qualcomm) 사례처럼 널리 알려진 공개적 차단 명령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미국 ODI 규제의 핵심은 특정 거래의 금지 사례를 열거하는 것보다 법적 금지·신고 체계가 이미 가동 중이며, 대상 분야와 우려국이 명확히 특정되었다는 점에 있다.[18]

14) 財務省(2020),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Apr. 24.; 財務省(2023), "Mandatory Notification of Foreign Investors", May.

15) 財務省(2024),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Annual Report(FY 2023)", Nov. 29.

1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ogram Regulations",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outbound-investment-program/program-regulations(접속일: 2026. 3. 24).

1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4), "Additional Information on Final Regulations Implementing Outbound Investment Executive Order (E.O. 14105)", *Press Release*, Oct. 28.

1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outbound-investment-program(접속일: 2025. 3. 24).

2) EU: 금지제도보다는 회원국 점검체계 구축 단계

EU는 아직 미국과 같은 구속적·독립적 ODI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유럽위원회는 2024년 1월 경제안보 패키지에서 해외투자백서(Outbound Investment White Paper)를 제시했고, 이어 2025년 1월 15일 회원국들에 대해 비 EU 국가로의 해외투자를 점검하도록 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 권고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3대 기술 영역으로 제시하고, 회원국들이 관련 투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9)]

즉 EU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특정 거래를 금지했다는 의미의 대표적 ODI 차단 사례를 제시하기 어렵다. 대신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위원회가 이미 공식적으로 해외투자 심사의 필요성을 제도화했고, 전략기술의 역외 이전이 경제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회원국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미국식에 가까운 보다 강한 제도 도입의 전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3) 일본: 독립적 ODI 금지제도보다는 FEFTA 기반 기술 이전·대외거래 관리

일본은 미국처럼 별도의 독립된 ODI 심사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에 따라 수출통제와 기술 이전 통제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METI)의 영문 가이드는 허가가 필요한 기술의 이전에는 물리적 반출뿐 아니라 온라인 회의,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폐쇄형 강의·회의에서의 기술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해외투자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해외사업·연구협력·기술제공 과정에서 전략기술이 역외로 이전되는 경로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METI는 보안수출통제 관련 '준사고(near miss incidents)' 자료를 통해, 외국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의 협업이나 온라인 회의 과정에서도 통제기술 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례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형사처벌 사례를 나열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실제 행정 운영 차원에서 대학·연구기관·기업의 해외 협력과 기술 이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운영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해외투자 금지 사례를 미국식으로 제시하기보다는, FEFTA를 중심으로 기술 이전·해외협력·대외거래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서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최근 일본 정부 자료도 FEFTA 상 안보 목적의 수출·기술 통제가 경제안보 수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19) European Commission(2025), "Commission calls on Member States to review outbound investments and assess risks to economic security", *Press Release*, Jan 15.

4. 한국 투자제도의 현황과 제도 검토 사항

(1) 한국 투자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

한국의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관련 제도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투자 심사 제도가 단일 법률이나 통합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여러 법률과 제도에 분산되어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중심으로 투자 신고 및 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제도, 방위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략산업과 공급망 관점에서 투자 및 기술 이전을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투자(ODI)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외환 관리 및 통계 목적의 신고 제도 성격이 강하며, 미국의 해외투자 심사제도과 같은 국가안보 목적의 해외투자 심사 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및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부 승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기술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투자는 일정 부분 관리되고 있는 구조이다.

즉 한국의 투자 관련 제도는 외국인 투자 규제와 해외투자 관리가 별도의 법률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목적의 투자 심사는 특정 기술 및 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최근 한국의 투자 및 기술보호 제도 강화 움직임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투자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도 투자 및 기술

20) 법률신문, "첨단기술,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기술 관련 제도의 비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44(접속일: 2026. 3. 15).

〈표 4〉 한국의 투자 관련 제도 및 법률

	세부 분야	관련 법률	주요 관리 내용
외국인투자 (Inward FDI)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허가, 투자 지원 제도 운영
	전략기술 보유 기업 투자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인수합병, 합작투자 승인
	방위산업	방위사업법	-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승인
	통신 및 기간인프라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첨단전략기술 및 기업의 해외 이전, 투자, 기술 이전 관리
해외투자 (Outbound ODI)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 해외투자 신고 및 외환 관리
	기술 해외 이전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 해외 이전 승인
공급망 관련	공급망 핵심 기업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 공급망 핵심 품목 및 기업 관리, 공급망 안정 정책

자료: 각 법령 및 언론기사[20] 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전과 관련된 제도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21]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국가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이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먼저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이나 수출에 대한 관리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취득,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투자 행위도 사실상 기술 이전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자체에 대한 심사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일정 지분 이상의 외국인 투자나 기업 인수의 경우 정부 승인 대상이 되며, 승인 없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과 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이전, 기술 이전, 투자 등에 대해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22] 이는 외국인 투자 규제 제도를 별도로 강화하기보다는 전략 산업 보호 정책과 투자 및 기술 이전 관리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제정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역시 투자정책과 산업정책, 공급망정책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핵심 품목 및 공급망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망 핵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해외 이전, 해외 생산 이전 등에 대한 정책적 관리 필요성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투자정책이 단순한 자본 이동 정책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유지 정책과 결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해외투자 및 기술 이전 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보면 외국인의 자국 내 투자 규제뿐 아니라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이전을 관리하는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해외투자 심사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와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를 금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EU 역시 해외투자 리스크 검토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FEFTA를 통해 기술 이전과 해외 협력 활동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독립적인 해외투자 안보 심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해외투자 신고 제도는 외환 관리 목적의 제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방위산업, 첨단소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해외투자와 합작투자,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기술 이전과 산업 기반 이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1) Social Economic Daily, "Korea Urged to Strengthen Foreign Investment Security Screening", https://en.sedaily.com/news/2026/03/10/korea-urged-to-strengthen-foreign-investment-security(접속일: 2026. 3. 15).

2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4238(접속일: 2026. 3. 15).

특히 해외생산기지 이전, 합작투자(JV), 기술 협력, 연구개발 협력, 라이선스 계약 등은 단순한 투자 활동을 넘어 기술 이전과 공급망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도 전략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4) 한국 투자 관련 경제안보 제도에 대한 시사점

최근 주요국의 투자정책은 시장 경제에 기반한 투자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 보호, 핵심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자국 기업 인수 및 투자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 이전까지 정책 관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정책은 산업정책, 기술정책, 공급망정책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 규제라기보다는 전략기술, 핵심 인프라, 공급망 안정성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위험 관리 정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은 투자 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전략 산업과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와 해외투자는 산업경쟁력과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투자정책은 기본적으로 투자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제한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견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투자환경의 안정성과 개방성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요소이다.

다만 최근 글로벌 산업 및 통상 환경 변화와 주요국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전략기술 보호, 핵심 인프라 보호,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기술 이전, 해외 생산 이전 등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 관리 차원의 정책 논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 규제, 해외투자 신고제도,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 첨단전략산업 정책,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이 각각의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기반 자체는 일정 부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 기술, 공급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향후 투자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투자 자유화와 개방성 유지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전략기술 보호, 핵심 인프라 보호,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제도 변화와 글로벌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투자정책, 산업정책, 공급망정책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의 정책 과제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투자정책은 투자유치와 투자 자유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전략산업과 핵심기술, 공급망 안정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위험 관리와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점차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정책은 투자 개방성 유지와 경제안보 위험 관리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경제안보, 투자안보화, 전략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연구위원
jyang@kiet.re.kr / 044-287-3123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경제안보적 영향 분석」(공저, 2025)
「미(美) 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공저, 2025)



육지희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위촉연구원
jhyuk@kiet.re.kr / 044-287-3678
「신냉전 시대, 중국의 사이버 안보 조치와 통상 이슈 및 시사점」(2024)
「디지털 시대, 차량데이터 관련 이슈와 시사점」(2023)
「중국 데이터 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2023)